

처 분 서

연번	지 적 사 항	처 분
1	<p>청렴의무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3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·차량·선박·항공기·건물·토지·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, - □□□□부서 ○○○은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 제2조 제2호다목에 따라 국립학교의 교직원인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대학 물품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△△△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례금 10만원을 받은 후 반환한 사실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징계 과태료

처 분 서

연번	지 적 사 항	처 분
2	<p>국가공무원의 겸직 승인 지연에 관한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4조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공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사전에 신청하여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◇◇◇◇부서 ▽▽▽는 부동산 임대업(4곳)에 종사 하면서 사전에 겸직승인을 받지 않고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 에 겸직 승인 신청을 하는 등 지연 신청한 사실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